

영등포구의회  
제209회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오 현 속 의원 발의】



2018. 9. 14.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12호로 2018년 8월 31일 오현숙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지원 등 아동복지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다.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마. 위원장 직무, 위원회 회의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 바. 구청장의 우선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사. 위원회 간사, 참석수당,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3조)

#### 4. 참고사항

- 가. 관련근거: 「아동복지법」 제12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다. 입법예고(2018. 8. 24. ~ 8. 30.):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총 13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됨
- 주요 제정 내용은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2조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및 퇴소 조치 등 아동복지심의

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제4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임기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제6조까지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제8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9조~제10조까지는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청취 및 긴급한 경우 구청장이 우선조치 하고 사후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둬.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2012. 8. 5.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음에도 우리구는 아직까지 조례를 제정<sup>1)</sup>하지 않고 있어 의원발의를 통해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와 지원 등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

---

1)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관련 조례 서울시 17개 자치구에서 조례제정 시행중(2018년 8월 기준)

거를 마련한 것임.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시립 2개소, 구립 2개소, 민간 14개소로 총 1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구 저소득층 아동 중 약 520여명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아동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와 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12조제3항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을 연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관 련 법 령

### ■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19.>

###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 3. 6.>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3. 6.>
- ③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8. 3. 6.>
-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6. 11., 2018. 3. 6.>
1. 시·도 교육청(시·군·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 3. 6.>
-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3. 6.>
-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3. 6.>